

2024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Korea Worker Institute · Union Center

이슈와 쟁점

일 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교육·조사·연구 활동으로 미래세대와 노동하는 시민 모두의 권리보장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슈와 쟁점은 전문 필진들의 글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사회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노동, 청년, 인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민을 풀어봅니다.

vol. 26

국내외 지방정부의 플랫폼노동 접근과 정책 특징
- 플랫폼노동 제도화 및 지원 유형을 중심으로 -

union-center.org

국내외 지방정부의 플랫폼노동 접근과 정책 특징 - 플랫폼노동 제도화 및 지원 유형을 중심으로 -

김 종 진 |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1. 머리말 - 플랫폼노동 대응 양식

- 초기 플랫폼노동은 일터로부터의 유해환경이나 일생활 균형 등에 있어서 자유롭고, 비공식 경제의 일이 공식부문으로 전환된다는 '긍정성'도 있지만, 비표준적 계약 및 노동안전보건 관리 허점이나 사회보험 미적용 등 '부정성'이 지적되었음. 플랫폼노동은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노동 참여를 촉진하는 장점도 있지만, 근로자성 탈피로 인해 고용조건이나 사회보험 및 안전에 아무런 제도적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단점도 있음(ILO, 2019b·2021).
- 국제기구나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과 경제현상에서 발생한 플랫폼노동의 보호 한계성을 지적함. 때문에 기존 법률 제개정이나 사회협약 혹은 분쟁해결 기구, 공정거래 및 표준계약과 단가, 사회보험, 안전건강, 교육훈련 등의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ILO, 2019·2021; OECD, 2019).¹⁾
- 한편 국제기구 및 각 국가별 플랫폼노동의 대응 전략은 구속력과 포괄성에 한계를 가짐. 유럽연합(EU, 2021·2022)은 각 회원국들에게 플랫폼노동 지침 및 권고와 이행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도 제안하고 있음.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과제 방향은 플랫폼경제와 노동의 정의, 정책적 이질성,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분쟁해결 메커니즘, 알고리즘, 모니터링, 고용지위와 보호, 투명성 등임.

* 이 글은 김종진(2023), 「국내외 플랫폼노동 지원사례」, 『경기도 플랫폼노동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보방안』, 한국비정규노동센터·유니온센터, 경기도 노동국, 185~202쪽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1) 한편 플랫폼노동은 당사자 조직의 제도 및 노동기본권 보장 활동을 통해서도 다양한 개선이 확인되는데, 독일 '극한배달'(Liefer am Limit) 명칭의 배달라이더 플랫폼노동조합은 2018년 11월 독일 식음료·숙박업노조(Gewerkschaft Nahrung-Genuss-Gaststätten, NGG)의 지부로 활동하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하고 있음. 이들은 2018년 초에 독일 쾰른의 '딜리버루(Deliveroo)' 라이더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현재는 '리퍼란도'의 라이더와 허브(HUB) 노동자가 주요 조합원임. 현재는 함부르크, 쾰, 브레멘, 프랑크푸르트, 뉘른베르크, 슈투트가르트 등에 지회를 설립하고, '리퍼란도'의 직원(라이더 및 허브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며, 단체협약 및 교섭, 파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그간 프랑스(2018)나 독일(2020), 스페인(2021)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노동을 제도화하여 보호하는 형태임. 독일은 ‘플랫폼 경제에서 공정한 노동’ 입장을 발표²⁾한 포괄적 형태이고, 프랑스는 노동권을, 스페인은 라이더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률적 보호의 방식임. 물론 독일과 프랑스처럼 플랫폼노동자 대상 상담구제(독일 : 옴브즈 오피스)나 노동환경 지원(프랑스: 우버관측소)과 같은 사례도 있음.
-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플랫폼노동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음. 현재 플랫폼노동 문제를 둘러싼 국제기구나 각 나라별 접근은 다양하고 대응도 차이가 있음. 한국에서도 플랫폼노동의 제도적, 실천적 대응과제를 모색한지 약 5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주요 국가나 도시에서의 다양한 제도와 지원 정책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임.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글은 플랫폼노동의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검토 했음. 국내에서 초기에는 주로 유럽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일부 사례가 국내에 소개되었으나 영미국가의 사례는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었음. 따라서 이 글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해외 지방정부의 플랫폼노동 제도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에서 플랫폼노동 관련 정책과 사업을 수립할 때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음.

II. 국내외 플랫폼노동 지원 유형의 특징들

1. 해외 지방정부의 플랫폼노동 접근과 특징

- 플랫폼노동 관련 제도화는 영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에서 법률 논의와 정책 혹은 운동의 흐름이 노동자 보호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제도화가 진척되었음. 국내에서도 알려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법제도를 통해 플랫폼노동을 보호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요 지역(메사추세츠, 뉴저지, 뉴욕)에서 법률이 제정되거나 발의 혹은 행정부나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도임.

2) 입장문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사회적 보호 강화,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공정한 활동조건의 보장, 계약 조건 통제의 현실화, 투명성 강화: 신고 및 통계 보고 의무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한편 유럽이나 영미국가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최저임금과 노동안전(이탈리아 볼료냐 : 도시의 현장과 노동기본권, 미국 시애틀 : 최저임금 15달러 운동, 뉴욕: 프리랜서 법률, 메사추세츠: 유급병가, 영국 에든버러: 직노동 권리)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에서 플랫폼노동의 법률이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³⁾

[표1] 해외 주요 지방정부 플랫폼노동 지원 사례

구분	유럽 지방정부	미국 지방정부	
	현장과 정책	법률/조례(논의)	정책/사업
세부 내용	<p>[이탈리아 라치오주] 디지털노동기본권 : 동등한 노동, 안전장비, 수당 등 지급 권고</p> <p>[영국 런던 에든버러] 근로자와 자영업자 구분 플랫폼노동 권리 기준 제시</p>	<p>[메사추세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지위의 오분류 내용의 법률 개정 관련 임금노동 권리 보장문제 해결 발표</p> <p>[뉴저지] 플랫폼노동 관련 법률 제정 논의</p>	<p>[시애틀] 음식배달 노동자 주 최저임금 보장 법안 제정(주문 수락 건수나 최소 노동시간 강요 금지)</p> <p>[뉴욕] 최소 노동환경 및 권리 등을 담은 자치법규 제정 : 최소생활임금, 보수 기준 설정, 배달 대기시간(on-call time : 주문 대기 시간, 식당 이동 시간, 교통정체 지체 시간 등) 및 거리 등 제한 규정, 수수료 규정 등</p>

1) 영국 지방정부 플랫폼노동 접근⁴⁾

- 영국 중앙정부와 런던시는 각 경제 노동자 권리 안내서(guidance)를 제공하고 있음. 2022년 우버(Uber)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어 피고용인(employee), 노동자(worker), 자영업자(self-employed) 구분, 법적 보장 권리의 안내서와 고용주 안내서를 홈페이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 런던시는 각 경제 노동자들을 위해 좀 더 특화된 홈페이지(Rights for gig economy workers)를 개설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에든버러는 각 경제 태스크포스(Edinburgh Council's Gig Economy Task Force)의 사례도 최근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음. 태스크포스는 2021년 UK 고등법원이 우버

3) 캘리포니아 AB5 법안은 a)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b)그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c)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해당 사업에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AB5 법안 내용은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

4) 한편 영국에서는 플랫폼노동과 관련하여 영국노총(TUC)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음. 하나는 디지털접근 권한(digital right of access)이고, 다른 하나는 부문별 단체교섭권리(rights to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임. 이는 영국 노동당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Green Paper for Employment Right)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사업자 동의 없는 사업장접근에 대한 권한이 없는 영국 상황을 반영한 것임. 디지털접근 권한(A digital right of access)은 노동조합이 디지털로 노동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모든 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상당수 공유사업장이 없는 플랫폼노동자 조직화에 중요하기 때문임. 부문별단체교섭(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은영국 내 상당수 단체협약이 사업장 기반으로 이루어져 유럽의 여타 국가들에서 단체협약이 갖는 영향력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따라서 영국노총은 부문별 단체협약이 사업장 내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조절함으로써 플랫폼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Uber) 판결 이후 의회에 의해 구성된 것임.⁵⁾ 이들은 각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조직화 어려움, 불명확한 노동시간, 안전한 작업 위한 훈련, 정보, 도구의 부재 등)을 바탕으로 에든버러 의회에 권고사항을 제안했음.

영국 에든버러 각경제 태스크포스의 의회 제출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노동자 조연과 지원 제공 목적의 노동자센터(workers' hub) 설치 ☑ 에든버러 내 노동자들의 권리, 우수사례, 지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 캠페인 (Licensing 허가 및 규제) 각 경제와 불안정노동(precarious work)에 대한 허가와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촉진 ☑ (Procurement 조달) 공공부문의 조달패어워크 및 각 이코노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각 경제 노동자, 기업 및 정부와의 추가 작업을 촉진 ☑ (Data Rights and Access 데이터 권한 및 접근) 각 경제 내 노동자들의 데이터 권한 및 접근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각 경제 노동자, 기업 및 정부와의 추가 작업 촉진, 주최. ☑ (Alternative Gig Economy Business Models 대안적 각 경제 비즈니스 모델) 다른 유럽 도시에서 관찰된 사례에 대한 청취를 위해 각 경제 노동자, 기업 및 정부와의 추가 작업 촉진 ☑ (A workers' charter for Edinburgh 에든버러 노동자헌장) 위의 모든 사항을 바탕으로 시의회는 각 경제 노동자, 기업 및 정부의 참여 촉진
--

2) 미국 지방정부의 플랫폼노동 접근

- 미국 플랫폼노동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캘리포니아주 AB5법률이 잘 알려져 있으나, 이후 타 지역(메사추세츠, 뉴저지, 뉴욕)에서도 영향을 받아 법률이 제정되거나 발의 혹은 행정부나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지방정부에서 플랫폼노동(공유택시기사, 음식배달 기사)의 최저임금보장 법안이 발의되거나 표준임금제 및 최저임금 보장을 시행하고 있음.
- 해당 지역에서는 플랫폼노동자의 시간당 최저단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운영을 하고 있음. 몇몇 미국 도시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최저임금과 노동안전(시애틀 : 최저임금 15달러 운동, 뉴욕주: 프리랜서 법률, 메사추세츠: 유급병가 도입) 등 플랫폼노동 관련 법률과 정책이 모색되고 있음.

[표2] 미국 지방정부 주(state)별 플랫폼노동 제도화 및 지원 정책 현황

주	도시	플랫폼노동 제도화 및 지원 정책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리스	• AB5 법률 제정 (법률 정지)
워싱턴	시애틀	• 2022년 6월 음식배달 노동자의 주 최저임금 보장 법안 제정 : 시급 17.27달러 보장, 주문 수락 건수나 최소 노동시간 강요 금지

5) 영국 에든버러 각경제 태스크포스는 각 노동자, 노조 대표, 학자, 의회와 스코틀랜드 정부 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었음.

주	도시	플랫폼노동 제도화 및 지원 정책
매사추세츠	보스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계약자 아닌 노동자 인정 관련 법원 소송 제기했으나 기업의 저항으로 지역 시민 발의 법률 모색 중
뉴욕	뉴욕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시기 플랫폼노동자의 최소 노동환경 및 권리 등을 담은 자치법규 제정 (six-bill legislative package) 최소생활임금, 보수 기준 설정, 배달 대기시간(on-call time : 주문 대기 시간, 식당 이동 시간, 교통정체 지체 시간 등 포함), 및 거리 등 제한 규정, 수수료 규정, 음식 배달 가방제공, 건물 화장실 사용 등 21년 배달노동자 최저소득기준 A minimum pay standard for delivery workers 승인
뉴저지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부터 의회 주도 발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ABC법안과 같은 기준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계류 중
앨라배마	버밍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보다는 '독립계약자'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 통과. 최저임금 기준이 없거나 매우 낮은 임금수준 유지
조지아	애틀랜타	
애리조나	피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계약자 분류로 유지하도록 노력
아칸소	리틀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kansas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PUA)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각 노동자 또는 기존에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기타 개인에게 실업 관련 보장을 제공
콜로라도	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에게 '인수율(take rates)'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Gig Work Transparency' 법안을 지지
코네티컷	브리저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인 상원 법안 1180의 통과를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생활임금, 주 외의 승객 탑승 승인, 임금 및 요금 공개 등이 포함
델라웨어	윌밍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는 코로나에 대응하여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한 법안으로, 자영업자와 각 노동자 포함
플로리다	잭슨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노동자 등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있는 대상에 기업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 오분류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고발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인 상원 법안 542번 통과
일리노이	시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계약자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월급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수 있는 IRA 플랜과 유사한 myRA 플랜에 액세스 가능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라델피아는 유무급 휴가 제도(PTO)가 의무화되지 않았으나, 2021년 3월경 코로나19 유급병가 지원대상을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
인디애나	인디애나폴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부터 새로운 연방 실업 수당 신청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이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 2019 지지
캔자스	위치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5월 Uber와 Lyft 운전자에게 최저임금과 기타 혜택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
오하이오	콜럼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랜서, 각노동자에 대한 기본 임금 보장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rtable benefits plan(SB233)에 서명. 이 법안은 기업이 독립 노동자에게 자유롭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법적 장벽을 제거
위스콘신	밀워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mazon Inc. 사례에서 위스콘신의 법안에 따라 택배 노동자가 실업 보험세를 받을 수 있도록 판결
와이오밍	샤이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노동자 권리법(Employee Rights Act of 2022) 도입
테네시	내슈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시기 PUA 프로그램 하에 자영업자/플랫폼노동자도 실업급여 대상 포함

2. 한국 지방정부의 플랫폼노동 접근과 특징

- 한국에서는 플랫폼노동 정책으로 2020년 12월 중앙정부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권익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생태계 조성이라는 4가지 주요 과제를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했음(관계부처 합동, 2020). 현재 고용노동

6)

https://peltongraham.com/new-york-city-stop-abusive-gig-work-practices/?gad=1&gclid=Cj0KCQjwkqSiBhDaARIsAFJANkhVp0o_QzuTMGd7Ktz7d-3ujHemnmcAUuzRBH7Rf8KbW3y9LGclOzQaAv0sEALw_wcB

부는 플랫폼노동 교육(내일배움카드 지원 사업)과 사업장 지원 사업(음식배달, 대리 기사, 가사청소 등)을 시행하고 있고 2020년부터 일부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과 고용 보험 등 적용을 하고 있음.

- 한국의 주요 지방정부에서 플랫폼노동 조례는 2024년 1월 기준 22곳에서 제정되었고, 조례에 맞추어 종합계획이나 지원 정책을 수립한 곳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임. 그나마 몇몇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조례, 정책, 사업(센터)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서울, 경기, 부산, 충남 정도만이 플랫폼노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거나 했었고, 기초 지역에서는 거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정책은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 뿐임([표3]).

[표3] 한국 지방정부 플랫폼노동 지원 사례

구분	광역 지방정부		기초 지방정부	
	서울시	경기도	경기지역 (성남, 안산)	그 외 지역 (전주, 창원)
세부 내용	[별도 조례] 無 [전담 조직] 有 [주요 사업] *이동 쉼터 *유급병가 *도심센터 상담, 교육 *세무지원, 소액대출 * 2개 직종(방문레슨,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 표준 계약서 보급 *배달 안전교육	[별도 조례] 有 [전담 조직] 有 [주요 사업] *이동 쉼터 *연구실태조사 *노동권익센터 등 상담, 교육 *배달 산재보험 지원 *배달 안전교육 *노동권익 배달 노사정협약 등	[별도 조례] 無 [전담 조직] 無 [주요 사업] * 이동쉼터, 라이더 안전(안산) * 배달 산재보험 지원(성남)	[별도 조례] 無 [전담 조직] 有 [주요 사업] *이동 쉼터/상담(전주) *배달 산재보험 지원(창원)

- 그나마 플랫폼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일부 광역 지방정부에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기초에서는 음식배달 라이더 등 소수 플랫폼노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주요 정책과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시행, 운영, 설치 등이며, 휴게시설/공간 지원, 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법률 상담 및 지원사업, 산재 예방 교육 및 장비 지원, 생활안정 및 사회보험 지원, 조직화 지원으로 구분됨.

- 국내 권역(수도권-비수도권) 및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여 플랫폼노동 사업을 추진하는 곳을 보면 대부분 노동기본/권익 혹은 플랫폼노동 조례 근거하거나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제28조, 제95조의 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임. 그나마 여타의 사업은 단체장 교체나 중앙 정부 사업(산재보험료 지원)이 추진되면서 중단(산재보험료 지원)되었음. 더불어 대부분 플랫폼노동 사업은 지역기반(Platform worker based on local)이 깃노동(gig) 형태의 운송배달 등에 국한된 이

동노동자 쉼터 사업들이 대부분임.

- 특히 한국 지방정부의 플랫폼노동 주요 사업은 이동노동자 공간지원 및 상담, 안전교육, 표준계약서 개발, 보험료 지원 4개 형태에 국한되고 있음. 아직 대부분 이동노동자 쉼터를 통한 공간 제공과 상담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물론 몇몇 지자체 산하 센터들에서 일부 이동노동자 대상 사업(교육, 무더위 생수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특정 대상과 시기, 기간에 국한된 내용들이 대부분임.
- 플랫폼노동 정책과 지원 사업을 보면 전통적인 특수고용노동자 직종이 자본과 기술이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오프라인 플랫폼노동으로 전환된 운송·음식배달 노동자나 기사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임. 이것은 아직도 국내 거의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플랫폼노동의 협소한 영역만을 인지하거나 사업의 편이성 혹은 가시적 성과(단기적 성과 드러내기)에 국한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임.

[표4] 주요 광역, 기초 지자체 플랫폼노동 지원 사업 현황(2021-2023)

		광역		기초	
		서울	충남	전주	창원
조례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無	창원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사업1	이동노동자 쉼터/센터	시립 5개 도봉/서대문 2개	1곳 (천안 두정)	전주 2곳 (완산, 덕진)	창원 1개 마산 1개
	예산	1,253백만원	44백만원(국-도비)	220백만원	360백만원(도-시비)
	추진 방식	노동권익센터	위탁 운영	시 직영(상담/교육)	시 직영
사업2	이동노동자 안전교육	교통안전이론 주행실습			
	예산	150백만원			
사업3	상해보험	배달 상해보험	배달 산재보험료		배달 산재보험료
	예산	2,467백만원	247백만원(1년 사업)		120백만원(1년 사업)
사업4	표준계약서	방문 레슨			
	예산	50백만원			
	추진 방식	연구용역 발표			

* 주 : 서울시노동권익센터는 2023년 하반기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와 <이동노동자 사회적 보호 및 사회공헌 업무협약서>을 체결(2023.9.21.)했으며, 주요 내용은 노동환경 개선 지원,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 보호 사항임.

III. 맺음말- 지방정부 역할과 시사점

-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몇몇 지방정부의 플랫폼노동 정책과 지원 사업을 보면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상호보완적 과정을 통해 자치법규 조례 제정과 제도(디지털노동기본권 헌장)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지역사회 시민과 소비자들이 플랫폼노동 문제와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캠페인은 중요 영역임. 물론 각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와 조정 그리고 전문가그룹들과 협업을 통한 최저소득(뉴욕, 씨애틀) 보장이나 유급휴가 수당 등의 다양한 사례 검토를 통해 정책과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한국의 지방정부에서는 플랫폼노동 지원 및 사업은 조례 제정이나 개정(기존 노동권익 유관 조례) 등 제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모색해야 함.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보면 공통적인 사업 영역은 유사하게 확대 강화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은 웹기반 플랫폼노동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표6]). 참고로 2023년 지역 플랫폼노동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중앙정부 역할로 ‘과도한 수수료’(5점 만점 기준 4.1점), ‘표준계약 의무 적용’(4.0점), ‘플랫폼 업체 사용자 책임 부과’(4.0점)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5] 플랫폼노동 제도와 정책 지원 당사자 의견(단위: 1~5점)

중앙정부 역할	의견	지방정부 역할	의견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중개료) 규제	4.1점	플랫폼 종사자 권리침해 법률 상담	4.2점
공정거래 위한 표준위탁 계약서 의무적용	4.0점	플랫폼 기업 표준위탁계약서 적용 지원	4.0점
플랫폼 업체의 사용자 책임 부과	4.0점	플랫폼 종사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4.0점
플랫폼 업체, 중개업체, 고객과의 분쟁 조정기구 설치	3.8점	플랫폼 종사자 감정노동 예방 활동	4.0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3.7점	플랫폼 종사자 사회보험료 지원	4.0점
프리랜서 아닌 법률상 근로자 지위 인정	3.7점	플랫폼 노동존중 캠페인 활동	4.0점
플랫폼 일 관련 전문교육, 직업훈련 실시	3.7점	플랫폼 종사자 산업안전 예방 활동	3.9점
		플랫폼 종사자 상병수당 지급	3.9점
		플랫폼 종사자 노동공제회 활성화 지원	3.9점
		플랫폼 종사자 쉼터 제공	3.8점

* 주 : 플랫폼노동자 설문조사는 2023년 상반기(3월-6월) 4개 업종-직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이며, 조사표본 1,121명 중 유효표본은 1,005명(대리운전 313명, 음식배달 300명, 가사 227명, 데이터입력 165명)임.

*자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유니온센터(2023), 『경기도 플랫폼노동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보방안』, 경기도 노동국.

- 첫째, 플랫폼노동 정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 노동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현재 ‘웹기반 온라인 플랫폼노동’(Platform worker based on web)에 대한 사업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지방정부는 대상 유형과 구분의 국제적 기준(ILO)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웹기반 플랫폼노동은 기존 배달운송, 가사 노동자들과 다르게 프리랜서 형태이기에 교육훈련이나 공간 및 직무에 대한 욕구가 높고, 상대적으로 각 영역별 특성(번역, it, 레슨 등)이 있기에 해당 업종과의 협약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임.
- 둘째, 기존 지방정부의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은 ‘지역기반 오프라인 플랫폼노동’(Platform worker based on local) 중심의 사업인데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설할 곳에서는 내적 보완을 통해 사업의 질적 개선(공간 접근성 및 활용, 효과성)이 필요함. 초기의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이동노동자 쉼터가 제한적 공간이 활용되고 있기에 이동노동자 쉼터의 공간접 접근성과 함께 내용적 보완(콘텐츠와 서비스 제공,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플랫폼노동의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안전망은 무엇보다 건강권(아프면 쉴 권리: 소득과 육체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 찾을 수 있음. 플랫폼노동자들이 건강검진 등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지방의료원과 몇몇 의료기관(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건강(심리상담 및 치유)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저소득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지 않는 영역(건강보험)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음.